

# 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규정

(제정 2022.01.0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내 도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학을 출입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자전거
4. 그밖에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각종 이동장치로써 개인소유 및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장치

**제4조(통행의금지및제한)** 대학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통행 및 운행

**제5조(개인형이동장치의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하며,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⑥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⑦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행속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 운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 제3장 운전자의 의무

**제7조(운전자의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퍼스 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팟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종료하거나 주차를 완료하고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경적)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8.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않을 것. 다만, 2인용으로 제작된 자전거 탑승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띠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 조명을 부착할 것
12.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과 STOP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일단 정지할 것
13. 음주 후 운전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운전 금지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혈출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한 경우 경찰 협조를 구하여 조치할 수 있다.
14. 과로, 질병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
15.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
16.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대학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대학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거리확보)**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이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행자의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별도의 주차장소 혹은 설치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장소를 이용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의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2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 ① 대학은 제12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조치 및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고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 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요구 시 대학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 제4장 지도 감독 및 운영

**제13조(지도감독)** ① 대학은 본교 내의 원활한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도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 감독관은 교직원 외에도 관리 부서장 명의로 학생 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도 감독관은 제2장 및 제3장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또는 사후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시제재)**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 적발되는 경우 계도 조치 또는 당사자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